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16
----------	-------

발의연월일 : 2022. 3. 30.

발 의 자 : 지성호 · 김학용 · 박대수
조태용 · 백종현 · 김예지
이달곤 · 한무경 · 김석기
박성민 · 이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사업가에 대해 외교부가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 6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체포되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을 돕는 행위는 국제인권법상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로 보여짐.

따라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하여 국외 거주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3항제2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행한 인도적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생략)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3항제2호 단서----- ----- ----- ----- ----- -----.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2. ----- ----- ----- ----- ----- 사람.

<u><단서 신설></u> ④ (생략)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 부에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 (생략) 3.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 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② ~ ⑤ (생략)	<u>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을 목적으로 행한 인도적 행 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 ----- --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